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20 · 12 · 29 조례 제166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노래인 동요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 주며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동요"란 어린이들의 꿈과 의욕을 담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에 의해 불리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말한다.
 - 2. "동요문화산업"이란 동요와 관련 있는 문화산업(동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·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)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동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 - ② 시장은 동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, 인력·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 동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동요진흥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3년 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시 동요진흥 정책의 중·장기 기본방향
 - 2. 지역 동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 동요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 - 4. 동요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
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6.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업) 시장은 시의 동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동요 관련 콘텐츠 개발
- 2. 동요의 대중화·생활화를 위한 사업
- 3. 동요의 계승·발전을 위한 교육·학술·홍보·사업
- 4. 동요자원 조사·발굴·연구 및 동요 관련 자료집 발간사업
- 5. 동요 창작활동 지원
- 6. 동요 경연대회 및 축제 등 지원에 관한 사항
- 7. 동요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
- 8.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시장은 동요 및 동요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, 방법 등은 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7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「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·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